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0월 2일

나. 발 의 자: 임헌호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헌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과 구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를 예방·근절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안은 우리 구(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이 직무상 권한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직장 내 교육 등 예방 관련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신고, 조사, 그에 따른 보호 체계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공직사회의 권한 남용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한 것으로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조례로 구체화함으로써 우리 구(區) 내부의 청렴 문화 확산과 조직 신뢰성 제고가 기대되므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실질적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본 제정 조례안과 그 맥락을 함께 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에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을 담아 갑질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바, 시의적절한 제정이라고 여겨짐.
- 또한 상위법령들에서 부당한 직무행위나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체계는 이미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행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성격을 가지므로 그 효과를 강화하는 의미를 지니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1
----------	-----

발의연월일: 2025. 10. .

발의자: 임헌호, 정선희, 김지연,
이순우, 최인순, 이성수,
우경란 의원 (7인)

1. 제안이유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함.

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과 구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를 예방·근절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나.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안 제10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에 파견 근무 중인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법인·단체를 말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특정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하급자, 인사·예산·감사 담당자,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4.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직무권한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허가 지연·거부, 부당한 지시·요구, 계약상 부담 전가, 인사상 불이익, 금품·향응 요구, 인격모독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6.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7.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와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근절 대책(이하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직장교육 의무화) 구청장은 모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교육·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갑질 행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인적사항, 행위자, 내용 및 취지를 기재한 문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구청장은 동일 사건이 다른 조사기관에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신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질 행위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3.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② 구청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법률·심리상담 등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나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

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갑질 행위의 중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휴가·재택근무·교육 훈련·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구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감사부서는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② 구청장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